

# 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수리일:** 2015년 3월 31일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1.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종류 C-w 신설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 C-e/ I
- 연간 갱신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b>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보장은 없습니다.</b>	<b>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

		4. <u>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없습니다</u>	4. <u>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신설)	10. <u>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11. <u>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40)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40)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갱신		자료 업데이트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p>	<p>종류 C-w 신설</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내용추가</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p>	<p><b>(신설)</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 <b>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C/ C-e/ I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 <b>종류 C-w :</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C/ C-e/ I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C/ C-e/ I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b>종류 C-w</b></p> <p>- <b>선취판매수수료: 없음</b></p> <p>- <b>후취판매수수료: 없음</b></p> <p>- <b>환매수수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C/ C-e/ I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w 신설 및 연간 갱신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b>(신설)</b>	<b>종류 C-w</b> - <b>집합투자업자보수: 0.10%</b> - <b>판매회사보수: 0.00%</b> - <b>신탁업자보수: 0.04%</b> - <b>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b>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b>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b>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b>(삭제)</b>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b> <b>- 변경된 투자설명서 참조</b>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신설)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삭제)

## 2.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종류 C-w 신설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1~C4/ C-e/ I
- 연간 갱신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u>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보장은 없습니다.</u>	<u>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

		4. <u>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없습니다</u>	4. <u>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신설)	11. <u>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12. <u>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37)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37)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갱신		자료 업데이트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p>	<p>종류 C-w 신설</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내용추가</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p>	<p><b>(신설)</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 <b>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C1~C4/ C-e/ I: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 <b>종류 C-w :</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C1~C4/ C-e/ I: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C1~C4/ C-e/ I: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b>종류 C-w</b></p> <p>- <b>선취판매수수료: 없음</b></p> <p>- <b>후취판매수수료: 없음</b></p> <p>- <b>환매수수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C1~C4/ C-e/ I: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w 신설 및 연간 갱신에 따른 자료 업데이트	<b>(신설)</b>	<b>종류 C-w</b> - <b>집합투자업자보수: 0.10%</b> - <b>판매회사보수: 0.00%</b> - <b>신탁업자보수: 0.04%</b> - <b>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b>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b>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b>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b>(삭제)</b>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b> <b>- 변경된 투자설명서 참조</b>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신설)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삭제)

### 3.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종류 C-w 신설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 C-e/ I / S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38)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3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p>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p>	<p>종류 C-w 신설</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내용추가</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p>	<p><b>(신설)</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 <b>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C/ C-e/ I/ S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 <b>종류 C-w :</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C/ C-e/ I/ S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C/ C-e/ I/ S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b>종류 C-w</b></p> <p>- <b>선취판매수수료: 없음</b></p> <p>- <b>후취판매수수료: 없음</b></p> <p>- <b>환매수수료: 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C/ C-e/ I/ S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종류 C-w 신설	<b>(신설)</b>	<b>종류 C-w</b> - <u>집합투자업자보수: 0.10%</u> - <u>판매회사보수: 0.00%</u> - <u>신탁업자보수: 0.04%</u> -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u>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b>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 4.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종류 C-w 신설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I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소 변경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38)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C-w 신설		종류 C-w (B033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C-w 신설		종류 C-w 신설에 따른 내용추가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	<b>(신설)</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 <b>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C-w 신설 및 종류 I 환매수수료 정정	<b>(신설)</b>  - 종류 I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	- <b>종류 C-w :</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 종류 I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종류 C-w 신설 및 종류 I 환매수수료 정정</p>	<p><b>(신설)</b></p> <p>- 종류 I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b>종류 C-w</b></p> <p>- 선취판매수수료: <b>없음</b> - 후취판매수수료: <b>없음</b> - 환매수수료: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 종류 I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종류 C-w 신설</p>	<p><b>(신설)</b></p>	<p><b>종류 C-w</b></p> <p>- 집합투자업자보수: <b>0.10%</b> - 판매회사보수: <b>0.00%</b> - 신탁업자보수: <b>0.04%</b>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b>0.025%</b></p>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p>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p>
<p>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p>	<p>자료 갱신</p>		<p>자료 업데이트</p>
<p>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p>	<p>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p>	<p><b>(신설)</b></p>	<p><b>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b></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

**5.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 C-e/ C-w/ I / S
- 연간 갱신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보장은 없습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신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b>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b>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갱신		자료 업데이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w 및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추가)</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 종류 C/ C-e/ C-w/ I / S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	- 종류 C/ C-e/ C-w/ I / S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 종류 C/ C-e/ C-w/ I / S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	- 종류 C/ C-e/ C-w/ I / S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연간 갱신		<b>자료 업데이트</b>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b>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b>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b>			
1. 재무정보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b>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b>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b>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b>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b>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b>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b>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b> <b>- 해당사항 없음</b>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b>(삭제)</b>
------------------------	----------------	--	-------------

## 6.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 C-e/ C-w/ I / S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w 및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추가)</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 종류 C/ C-e/ C-w/ I / S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	- 종류 C/ C-e/ C-w/ I / S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 종류 C/ C-e/ C-w/ I / S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	- 종류 C/ C-e/ C-w/ I / S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u>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u>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u>14%</u>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u>15.4% (지방소득세 포함)</u>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u>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u>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u>(신설)</u>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u>(신설)</u>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 7.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1~C4/ C-e/ C-w/ I
- 연간 갱신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p><u>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보장은 없습니다.</u></p>	<p><u>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u></p>
		<p><u>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없습니다</u></p>	<p><u>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p>
	미국 해외금융계좌 납세협력법 (FATCA)과 관련하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신설	(신설)	<p><u>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u></p>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p><u>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u></p>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연간 갱신		자료 업데이트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p>	<p>종류 C-w 및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p>	<p>-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추가)</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p> <p>-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p>	<p>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p>	<p>- 종류 C1~C4/ C-e/ C-w/ I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 종류 C1~C4/ C-e/ C-w/ I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p>	<p>- 종류 C1~C4/ C-e/ C-w/ I : <b>90 일 미만: 이익금의 70%</b></p>	<p>- 종류 C1~C4/ C-e/ C-w/ I :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연간 갱신</p>		<p><b>자료 업데이트</b></p>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p>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b>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p>	<p>연간 정기갱신</p>		<p>자료 업데이트</p>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연간 정기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신설)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삭제)

### 8.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종류 C-P 및 S-P 신설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 C-e/ C-w/ I / S
- 투자적격등급 문구 추가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u>종류 C-P (B0667)</u> <u>종류 S-P (B1265)</u>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 신설		<b>종류 C-P (B0667)</b> <b>종류 S-P (B1265)</b>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나. 종류형 구조	종류 신설		종류 C-P 및 S-P 신설에 따른 내용 추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피투자펀드 주요 투자전략에 "투자적격등급" 정의에 대한 문구 추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주요 투자전략: 통상적인 상황에서 피투자 펀드는 주로...(중간생략)...피투자펀드는 (i)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및 (ii)잠재적 위험의감소를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추가)</b>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 주요 투자전략: 통상적인 상황에서 피투자 펀드는 주로...(중간생략)...피투자펀드는 (i)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및 (ii)잠재적 위험의감소를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투자적격등급"은 Moodys 가 Baa(Baa1, Baa2, 및 Baa3 를포함) 또는 그이상으로 평가하거나 S&amp;P 가 BBB(BBB+ 또는 BBB-를 포함) 또는 그이상으로 평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따라 인정된평가기관이 그와 동등하게 평가한 채권(fixed-income securities)을 의미합니다.</b>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 종류 S-P 신설 및 종류 C-w, 종류 I 가입 자격 내용 정정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추가)</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신설)	<p>- <u>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u></p> <p>- <u>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u></p>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종류 C-P, 종류 S-P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신설)  - 종류 C/ C-e/ C-w/ I / S : <b><u>90 일 미만: 이익금의 70%</u></b>	<p>- <u>종류 C-P : 환매수수료 없음</u></p> <p>- <u>종류 S-P : 환매수수료 없음</u></p> <p>- 종류 C/ C-e/ C-w/ I / S :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P, 종류 S-P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신설)  - 종류 C/ C-e/ C-w/ I / S : <b><u>90 일 미만: 이익금의 70%</u></b>	<p><b>종류 C-P</b></p> <p>- <u>선취판매수수료: 없음</u></p> <p>- <u>후취판매수수료: 없음</u></p> <p>- <u>환매수수료: 없음</u></p> <p><b>종류 S-P</b></p> <p>- <u>선취판매수수료: 없음</u></p> <p>- <u>후취판매수수료: 없음</u></p> <p>- <u>환매수수료: 없음</u></p> <p>- 종류 C/ C-e/ C-w/ I / S :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종류 C-P 및 종류 S-P 신설</p>	<p><b>(신설)</b></p>	<p><b>종류 C-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집합투자업자보수: 0.10%</u></li> <li>- <u>판매회사보수: 0.60%</u></li> <li>- <u>신탁업자보수: 0.04%</u></li> <li>-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u></li> </ul> <p><b>종류 S-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집합투자업자보수: 0.10%</u></li> <li>- <u>판매회사보수: 0.18%</u></li> <li>- <u>신탁업자보수: 0.04%</u></li> <li>- <u>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u></li> </ul>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p>	<p>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b></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p>	<p>(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b>15.4% (지방소득세 포함)</b></p> <p>-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b>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b>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p>
<p>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과세</p>	<p>종류 C-P 및 종류 S-P 신설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과세사항 내용 추가</p>	<p><b>(신설)</b></p>	<p><b>(4)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u></li> </ul> <p>[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경된 투자설명서 참조</li> </ul>
<p>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b>(신설)</b>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 9.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환매수수료 정정: 종류 C/ C-e/ C-w/ I / S
- 투자적격등급 문구 추가
- 기타: 홈페이지 주소변경,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문서 전반	회사 홈페이지주소 변경	<a href="http://www.alliancebernstein.co.kr">www.alliancebernstein.co.kr</a>	<a href="http://www.abglobal.co.kr">www.abglobal.co.kr</a>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피투자펀드 주요 투자전략에 "투자적격등급" 정의에 대한 문구 추가	<p>&lt;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gt;</p> <p>- 주요 투자전략: 통상적인 상황에서 피투자 펀드는 주로...(중간생략)...피투자펀드는 (i)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및 (ii)잠재적 위험의감소를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b>(추가)</b></p>	<p>&lt;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gt;</p> <p>- 주요 투자전략: 통상적인 상황에서 피투자 펀드는 주로...(중간생략)...피투자펀드는 (i)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및 (ii)잠재적 위험의감소를 위해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b>"투자적격등급"은 Moodys 가 Baa(Baa1, Baa2, 및 Baa3 를포함) 또는 그이상으로 평가하거나 S&amp;P 가 BBB(BBB+ 또는 BBB-를 포함) 또는</b></p>

			<u>그이상으로 평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인정된 평가기관이 그와 동등하게 평가한 채권(fixed-income securities)을 의미합니다.</u>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3)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w 및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 <u>추가</u> )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특정금전신탁</u>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u>특정금전신탁</u>  -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 <u>삭제</u>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나. 환매, (3)환매수수료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 종류 C/ C-e/ C-w/ I / S : <u>90 일 미만: 이익금의 70%</u>	- 종류 C/ C-e/ C-w/ I /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 종류 C/ C-e/ C-w/ I / S : <u>90 일 미만: 이익금의 70%</u>	- 종류 C/ C-e/ C-w/ I / S : <u>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 <u>30 일 이상 90 일 미만: 이익금의 30%</u>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지방세법 개정사항 반영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u>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u>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u>14%</u>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u>15.4% (지방소득세 포함)</u>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u>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u> 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하생략)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 라. 운용자산규모	자료 갱신		자료 업데이트
5.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신설)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신설)	<u>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u>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규약 변경안내

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수리일:** 2015년 3월 31일

□ **대상 펀드:**

-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 **집합투자규약 주요 변경사항**

### 1.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종류 C-w 신설	<u>(신설)</u>	<u>5. 종류 C-w 수익증권</u>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 1 항	종류 C-w 신설	<u>(신설)</u>	<u>5. 종류 C-w 수익증권</u>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	<u>(신설)</u>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판매회사의 종합관리 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u>	<u>5.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 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u>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삭제)</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

		<u>신탁</u>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	자, 50억 이상 개인, 75억 이상 법인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9 조(보수) 제 3 항	종류 C-w 신설	<b>(신설)</b>	<b>(종류 C-w)</b> <b>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b> <b>2. 판매회사보수율: 연 0.00%</b> <b>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b> <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b>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3. 종류 C: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4. 종류 C-e: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5. <b>(신설)</b> 6. 종류 I: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3. 종류 C: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4. 종류 C-e: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5. <b>종류 C-w:</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6. 종류 I: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          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          외)</b>
--	--	--	---

**2.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종류 C-w 신설	<b>(신설)</b>	<b>8. 종류 C-w 수익증권</b>
제 10 조(수익증권 의 발행 및 예탁) 제 1 항	종류 C-w 신설	<b>(신설)</b>	<b>8. 종류 C-w 수익증권</b>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	<b>(신설)</b>  9.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판매회사의 종합 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 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b>8.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 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 탁</b>  9.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 32 조(투자신탁 의 회계감사)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 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 아야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 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 아야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b>

			<p>1. 회계기간의 말일</p> <p>2. 투자신탁의 해지일</p>
제 39 조(보수) 제 3 항	종류 C-w 신설	<b>(신설)</b>	<p><b>(종류 C-w)</b></p> <p><b>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b></p> <p><b>2. 판매회사보수율: 연 0.00%</b></p> <p><b>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b></p> <p><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b></p>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p>3~6. 종류 C1/ C2/ C3/ C4: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7. 종류 C-e: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8. <b>(신설)</b></p> <p>9. 종류 I: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3~6. 종류 C1/ C2/ C3/ C4: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7. 종류 C-e: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8. <b>종류 C-w:</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9. 종류 I: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b>5. (신설)</b></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b></p>

**3. AB 이머징마켓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종류 C-w 신설	<u>(신설)</u>	<u>5. 종류 C-w 수익증권</u>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 1 항	종류 C-w 신설	<u>(신설)</u>	<u>5. 종류 C-w 수익증권</u>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	<p><u>(신설)</u></p> <p>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u>5. 종류 C-w: 판매회사의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u></p> <p>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삭제)</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u>(신설)</u></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u>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p>
제 39 조(보수) 제 3 항	종류 C-w 신설	<u>(신설)</u>	<p><u>(종류 C-w)</u></p> <p><u>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u> <u>2. 판매회사보수율: 연 0.00%</u> <u>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u> <u>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u></p>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종류 C-w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p>3. 종류 C: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p> <p>4. 종류 C-e: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p> <p>5. <b><u>(신설)</u></b></p> <p>6. 종류 I: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p> <p>7. 종류 S: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p>	<p>3. 종류 C: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p>4. 종류 C-e: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p>5. <b><u>종류 C-w:</u></b>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p>6. 종류 I: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p>7. 종류 S: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p>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b><u>5. (신설)</u></b></p>	<p>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b><u>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 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u></b></p>

#### 4. AB 월지급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종류 C-w 신설	<b><u>(신설)</u></b>	<b><u>3. 종류 C-w 수익증권</u></b>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제 1 항	종류 C-w 신설	<b><u>(신설)</u></b>	<b><u>3. 종류 C-w 수익증권</u></b>

<p>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p>	<p>종류 C-w 신설에 따른 가입자격 내용 정정</p>	<p><b>(신설)</b></p> <p>4.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b>3.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또는 특정금전신탁</b></p> <p>4.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p>
<p>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 2 항</p>	<p>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신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기간의 말일</li> <li>2. 투자신탁의 해지일</li> </ol>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회계기간의 말일</li> <li>2. 투자신탁의 해지일</li> </ol>
<p>제 39 조(보수) 제 3 항</p>	<p>종류 C-w 신설</p>	<p><b>(신설)</b></p>	<p><b>(종류 C-w)</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b>연 0.10%</b></li> <li>2. 판매회사보수율: <b>연 0.00%</b></li> <li>3. 신탁업자보수율: <b>연 0.04%</b></li> <li>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b>연 0.025%</b></li> </ol>
<p>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p>	<p>종류 C-w 신설 및 종류 I 환매수수료 정정</p>	<p>3. <b>(신설)</b></p> <p>4. 종류 I: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3. <b>종류 C-w:</b></p> <p><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p> <p><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4. 종류 I:</p> <p><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p> <p><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제 45 조(집합투자 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 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 제외)</b>
---------------------------------	-----------------------------------	---	---

### 5. AB 퀄리티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5 조(판매가 격) 제 1 항	종류 C-w 및 종 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5. 종류 C-w: 판매회사의종합관리계좌 (WRAP Account), <b>(추가)</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 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 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5.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 (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 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 32 조(투자신탁 의 회계감사) 제 2 항	지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 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 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 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 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3. 종류 C: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  4. 종류 C-e: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  5. 종류 C-w: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  6. 종류 I: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  7. 종류 S: <b><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b>	3. 종류 C: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  4. 종류 C-e: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  5. 종류 C-w: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  6. 종류 I: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  7. 종류 S: <b><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b>
제 45 조(집합투자 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 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4. (생략) <b><u>5. (신설)</u></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 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4. (생략) <b><u>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 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 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u></b>

#### 6. AB 유럽 증권 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제 25 조(판매가 격) 제 1 항	종류 C-w 및 종 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5. 종류 C-w: 판매회사의종합관리계좌 (WRAP Account), <b><u>(추가)</u></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	5.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 (WRAP Account), <b><u>또는 특정금전신탁</u></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

		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 자,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 32 조(투자신탁 의 회계감사)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 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 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 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 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 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41 조(환매수수 료) 제 2 항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3. 종류 C: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4. 종류 C-e: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5. 종류 C-w: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6. 종류 I: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7. 종류 S: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3. 종류 C: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4. 종류 C-e: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5. 종류 C-w: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6. 종류 I: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7. 종류 S: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제 45 조(집합투자 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 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 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 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 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경</b>

			<u>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u>
--	--	--	---------------------------

### 7. AB 셀렉트 미국 증권 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w 및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8. 종류 C-w: 판매회사의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u>(추가)</u>  9.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특정금전신탁</u>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8.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u>또는 특정금전신탁</u>  9.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u>(삭제)</u>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 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u>(신설)</u>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 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u>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3~6. 종류 C1/ C2/ C3/ C4: <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  7. 종류 C-e: <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  8. 종류 C-w: <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  9. 종류 I: <u>90 일미만: 이익금의 70%</u>	3~6. 종류 C1/ C2/ C3/ C4: <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7. 종류 C-e: <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8. 종류 C-w: <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u>  9. 종류 I: <u>30 일미만: 이익금의 70% /</u>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제 45 조(집합투자 기구의 해지)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 없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 우는제외)</b>

**8.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3 조(집합투자기 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 3 항	종류 C-P 및 종류 S-P 신설	<b>(신설)</b>	<b>8. 종류 C-P 수익증권</b> <b>9. 종류 S-P 수익증권</b>
제 10 조(수익증권 의 발행 및 예탁) 제 1 항	종류 C-P 및 종류 S-P 신설	<b>(신설)</b>	<b>8. 종류 C-P 수익증권</b> <b>9. 종류 S-P 수익증권</b>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P, 종류 S-P 신설 및 종류 C-w,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5. 종류 C-w: 판매회사의종합관리계 좌(WRAP Account) <b>(추가)</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 는 전문투자자,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b>8. (신설)</b>	5.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 좌(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b>8. 종류 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b>

		<u>9. (신설)</u>	<u>9. 종류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증개업인가를 받은 회사(겸영 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투자자</u>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39 조(보수) 제 3 항	종류 C-P 및 종류 S-P 신설	<u>(신설)</u>	<b>(종류 C-P)</b> <b>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b> <b>2. 판매회사보수율: 연 0.60%</b> <b>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b> <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b>  <b>(종류 S-P)</b> <b>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10%</b> <b>2. 판매회사보수율: 연 0.18%</b> <b>3. 신탁업자보수율: 연 0.04%</b> <b>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5%</b>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종류 C-P, 종류 S-P 신설 및 일부 클래스 환매수수료 정정	3. 종류 C: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4. 종류 C-e: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3. 종류 C: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4. 종류 C-e: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p>5. 종류 C-w: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6. 종류 I: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7. 종류 S: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p> <p><b>8. (신설)</b> <b>9. (신설)</b></p>	<p><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5. 종류 C-w: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6. 종류 I: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7. 종류 S: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b> <b>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p> <p><b>8. 종류 C-P: 환매수수료 없음</b> <b>8. 종류 S-P: 환매수수료 없음</b></p>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3 항	종류 C-P, 종류 S-P 신설에 따른 문구 추가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b>(추가)</b> 에 정한 바에 따라...(이하생략)	③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b>(종류 C-P 및 종류 S-P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b> 에 정한 바에 따라...(이하생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외)</b>
제 52 조(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종류 C-P, 종류 S-P 추가에 따른 문구 추가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b>(추가)</b>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 <b>(종류 C-P 및 종류 S-P의 경우에는 "연금지축계좌설정약관")</b> 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9. AB 위안화 플러스 UH 증권 자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 25 조(판매가격) 제 1 항	종류 C-w 및 종류 I 가입자격 내용 정정	5. 종류 C-w: 판매회사의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추가)</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특정금전신탁</b>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5. 종류 C-w: 판매회사의 종합관리계좌(WRAP Account) <b>또는 특정금전신탁</b>  6. 종류 I: 법 제 9 조 제 5 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 9 조 제 5 항 제 4 호, 법 시행령 제 10 조 제 3 항 제 15 호 내지 제 18 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b>(삭제)</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전문투자자, 50 억 이상 개인, 75 억 이상 법인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제 2 항	지분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 41 조(환매수수료) 제 2 항	일부 클래스 환매 수수료 정정	3. 종류 C: <u><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u>  4. 종류 C-e: <u><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u>  5. 종류 C-w: <u><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u>  6. 종류 I: <u><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u>  7. 종류 S:	3. 종류 C: <u><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u>  4. 종류 C-e: <u><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u>  5. 종류 C-w: <u><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u>  6. 종류 I: <u><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u>  7. 종류 S:

		<b>90 일미만: 이익금의 70%</b>	<b>30 일미만: 이익금의 70% / 30 일이상 90 일미만: 이익금의 30%</b>
제 45 조(집합투자 기구의 해지) 제 2 항	지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 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 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 1 인이되는경우(다 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없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는제 외)</b>

**10.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재간접형)**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2조(투자신탁 의 회계감사) 제2 항	지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령 문구 반영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 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 아야한다. <b>(신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날 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 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를 받아야한다. <b>다만, 투자자의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b>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45조(집합투자 기구의 해지) 제2 항	지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 률 개정사항 반영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업 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신설)</b>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한다. 이경우 집합투자 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 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b>5. 수익자의총수가1인이되는경우 (다만, 건전한거래질서를해할우려가</b>

			<u>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u>
--	--	--	----------------------------------